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개요

1.1 연구배경 및 목적

1.1.1 연구배경

- 최저임금제는 시행 이후 근로자의 최저임금 하한선 설정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정작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활임금제 도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현재의 최저임금은 1인가구 월 가계지출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생계조차 어렵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임금은 최저수준의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생활임금제 도입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영국·미국·뉴질랜드·캐나다 등 영국식 자유주의 모델을 따르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제가 적극 도입되고 있으며 실행에 따른 성과 분석 연구결과 그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의 생활임금제 도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충분한 검토, 적절한 근거자료 및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한 상황임

1.1.2 연구목적

- 생활임금제 도입의 필요성, 생활임금 산정기준 및 적용대상 검토, 원활한 도입 추진을 위한 근거와 실행방안 등을 제시
-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서울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적정 생활임금액을 제안

- 서울시 생활임금제의 원활한 추진 및 적용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실행방안을 마련

1.2 연구내용 및 방법

1.2.1 연구내용

- 생활임금제 도입의 필요성
- 국내외 생활임금 도입 사례 분석
- 서울시 생활임금제 적용방안 마련
- 서울시 현실을 고려한 적정 생활임금 수준을 도출
- 서울시의 생활임금제 적용 가능성을 모색
- 생활임금제 우선적용에 따른 예산부담 예측
- 생활임금제 실행방안 마련

1.2.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사례연구
- 생활임금 관련 전문가 및 담당자 자문

1.3 연구흐름

- 생활임금의 개념을 소개하고 유사 제도와의 차이점을 분석
- 생활임금의 도입 필요성을 살펴보고 생활임금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생활임금 산정
- 산정된 생활임금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생활임금제 적용 및 실행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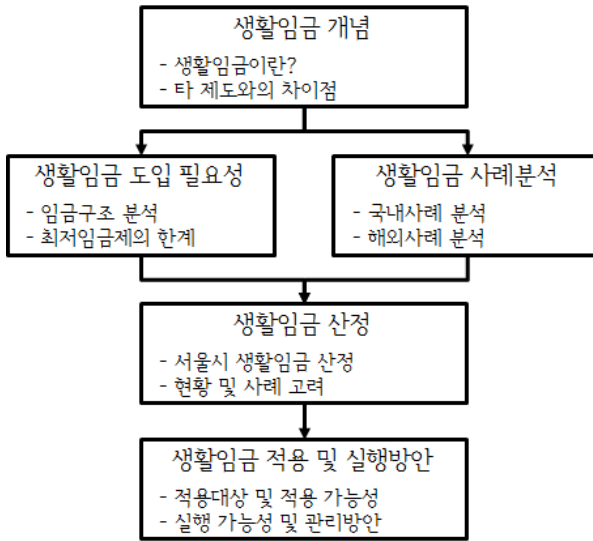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흐름도

1.4 생활임금이란?

1.4.1 생활임금의 정의

-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의 제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액(Mattew Pennycook, 2012)
- 생활임금은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에서 빈곤수준을 뛰어넘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임금을 의미
- 생활임금은 주 40시간의 노동만으로 양질의 주거·음식·교통·건강보험·통신·여가비용 등을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
-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근로자들의 주거비·교육비·문화비·교통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기초적인 적정소득을 의미

2 생활임금제 도입의 필요성

2.1 소득 및 임금구조 분석

- 4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소득불평등의 정도는 점차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산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소득 상위층과 하위층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소득불평등 심화는 저임금근로자의 증가로 인한 임금격차 확대, 원활하지 못한 소득재분배 등의 요인에 기인
- 임금구조를 살펴보면 한국의 저임금계층 비율은 2010년 25.9%로 OECD 22개 조사대상 국가 중 가장 높았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약 46.62%가 해당함

2.2 최저임금제의 한계

- 국내 최저임금은 2012년 현재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45.5% 수준에 불과하며 노사 간의 시각차 및 의사결정과정의 특성상 급격한 상승이 불가능한 구조임
- 전국 단일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2.3 생활임금제 도입의 효과

- 근로자들은 실질적인 임금상승으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며 노동의 질이 향상됨
-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통하여 사회보장 비용 등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음

- 생활임금제 도입 기관에는 이직률 감소, 근로자 교육비용 감소 등의 비용절감효과가 발생하여 오히려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줌

3 생활임금제 시행사례

3.1 국내사례

- 서울시 노원구·성북구, 부천시, 참여연대의 사례를 분석·정리
- 서울시 노원구·성북구는 실행을 염두에 두고 생활임금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계산
- 부천시는 전면적인 실행을 위해 조례제정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생활임금액을 산정
- 참여연대는 가족의 개념을 고려하여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한 생활임금액을 제시함

표 1 국내 생활임금 사례 종합

구분	성북구·노원구	부천시	참여연대(2011)
생활임금액	6,493원	5,180원	5,630원~10,152원
산정방법	근로자 소득	실태조사	다양한 조합
산정기준	근로소득 1인	근로소득 1인	4인가구 소득 및 지출
특징	실행을 우선적 고려	조례제정을 고려	가구원 수를 고려
보완점	산정기준이 단순함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시급기준이 제시되지 않음

3.2 해외사례

- 영국 런던, 미국, 뉴질랜드의 사례를 분석
- 영국 런던은 지출과 소득을 고려한 생활임금을 산정한 다음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15%를 가산
- 미국은 생활임금 계산기를 제공하여 가구별·지역별 생활임금액의 가이드라인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

- 뉴질랜드는 실제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와 이미 제공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생활임금액을 현실화

표 2 해외 생활임금 사례 종합

구분	영국 런던(2012)	미국(2011)	뉴질랜드(2012)
생활임금액	8.55파운드 (약 14,809원)	지역별 가계구성별 다양	18.40뉴질랜드달러 (약 16,353원)
최저임금	6.19파운드 (약 10,721원)	지역별로 다양함 (보이즈시 7.25달러)	13.50뉴질랜드달러
가계구성	다양한 가계구성	다양한 가계구성	4인가구 기준
산정방법	가계구성을 고려하여 가중평균 이용	기본비용에 세금지출 고려	도출된 지출항목값을 현실화
산정 기준	지출(생활비용)과 소득	지출(기본적인 생활비용)	지출(소비측면)
특징	불확실성에 대비한 추가부분	생활임금 계산기 제공	지역현황을 반영한 지출항목값 조정

4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 및 적용

4.1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 기준 및 방법

4.1.1 산정 기본방향

- 국내 및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 기본방향을 설정
- 서울시 노원구·성북구 및 참여연대의 생활임금 산정 방법을 고려하여 급여지급 기준의 판단 근거로 활용
- 영국 런던, 미국 및 뉴질랜드의 생활임금 산정 방법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 및 근로형태 가정의 판단 근거로 활용
- 국내사례와 해외사례에 나타난 기타자료를 분석하여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에 활용
-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에 통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서울의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국 데이터에 서울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하는 방법 또는 전국데이터의 일부 항목에 대하여 서울의 현실을 반영한 통계자

료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

-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임금을 산정하였으며, 산정척도로 상대빈곤기준선을 활용
- 상대빈곤기준선은 소득과 지출의 평균 또는 중위값의 50%를 적용하여 산정

4 1 2 산정 기본가정

- 복잡한 실생활의 모든 변수 및 상황을 반영하여 생활임금을 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계구성원, 가계 노동시간 등을 단순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 근로시간은 2012년 사업체노동력 조사를 참고하여 전일제 노동은 1일 8시간·월 209시간, 시간제 노동은 1일 6시간·월 156시간으로 가정
-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표준 가계 구성(4인가구)
 - 성인 ①은 전일제 노동(209시간)
 - 성인 ②는 시간제 노동(156시간)
 - 자녀 ①은 진학(초중고생)
 - 자녀 ②는 영유아(미취학)
 - 근로시간은 성인 ①과 성인 ②를 합쳐 총 365시간

4 2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 방법

- 가계구성은 산정 기본가정에 나타난 4인 가구를 따름
- 성인(부부)의 근로시간은 365시간으로 기본가정을 따름

4 2 1 근로소득기준 생활임금 산정

- 근로자 1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서울시 노원구·성북구의 산정방법과 유사하지만 전일제 노동자와 시간제 노동자

의 특성을 모두 고려했다는 차이가 있음

- 2012년 사업체 노동력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및 서울의 상용·비상용 근로자 소득을 파악하면 전국 상용근로자 월평균 정액급여(A)는 246만 9,814원, 서울 상용근로자 월평균 정액급여(B)는 293만 8,614원, 전국 비상용근로자 월평균 정액급여(C)는 129만 2,739원으로 나타나지만 서울 비상용근로자 월평균 정액급여(D)는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음
-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파악할 수 없는 서울의 비상용근로자 월평균 정액급여(D)는 비례식((A) : (C) = (B) : (D))을 사용하여 153만 8,116원으로 산정
- 월평균 정액급여를 평균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근로형태별 시간급을 추정하면 서울의 상용근로자의 시급은 14,060원, 비상용근로자의 시급은 9,860원으로 추정
- 근로자 평균 임금을 고려한 근로소득기준 생활임금은 상용근로자와 비상용근로자의 시급에 상대빈곤기준인 평균(소득) 50%를 적용하여 산출된 값을 산술평균하여 시간급으로 계산한 값인 5,980원임
- $[\{(B)의\ 시급\ 14,060원 \times 1/2 = 7,030원 \} + \{(D)의\ 시급\ 9,860원 \times 1/2 = 4,930원 \}] \times 1/2 = 5,980원$

4.2.2 가계소득고려 생활임금 산정

- 4인가구의 소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영국 런던의 소득을 이용한 생활임금 산정방법과 유사한 방식 적용
- 2012년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조사된 전국 4인가구 소득의 중위값은 405만 8천원이지만 지역별 값이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의 값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
- 서울시민복지기준선에 의하면 서울의 물가수준은 전국에 비해 16%가 높으며 이를 적용하게 되면 서울지역 4인가구 소득은 470만 7,280원으로 추정

- 가계소득을 고려한 생활임금은 서울시 물가수준을 반영한 4인가구 소득 추정치에서 상대빈곤기준인 중위값(소득) 50%를 적용하여 총 근로 시간으로 나눈 6,448원임

4.2.3 가계지출고려 생활임금 산정

- 영국 런던, 뉴질랜드, 미국 등이 가계지출을 기반으로 한 생활임금 산정 방식을 적용
- 이 연구에서는 4인가구의 지출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며 일부 값은 현실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서울시의 생활임금을 산정
- 2012년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4인 가구의 항목별 소비지출 및 비소비지출 금액을 구한 후 서울시 물가수준을 반영하고 중위값(지출) 50%를 적용한 값에 서울시 현황을 반영한 데이터를 더하는 방식으로 생활임금액을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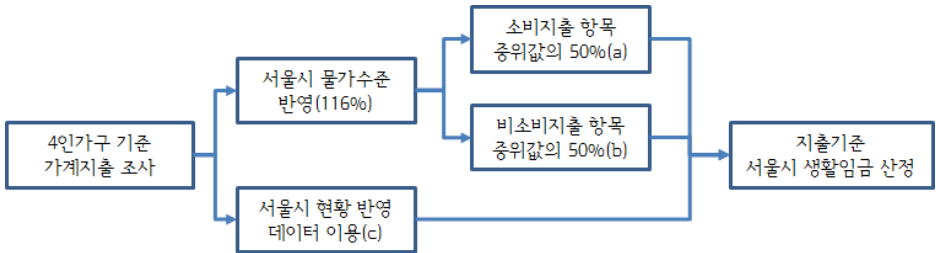


그림 2 가계지출을 고려한 생활임금 산정 과정 모식도

- 가계동향조사의 일부 항목은 서울의 현실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타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정
- 서울의 현실을 반영한 주요 항목은 주거임대료, 사교육비, 보육비용 등임
- 가계지출을 고려한 생활임금은 6,249원
- 서울시 물가수준 반영 소비지출 항목 중위값 합계는 233만 6,854원이

- 며 상대빈곤기준인 중위값 50%(a)를 적용하면 116만 8,427원
- 서울시 물가수준 반영 비소비지출 항목 중위값 합계는 51만 5,817원이
 며 상대빈곤기준인 중위값 50%(b)를 적용하면 25만 7,908원
- 서울시 현황을 반영한 데이터의 총 합계는 85만 4,400원(c)이며 주거
 임대료 600,000원은 ‘서울시 주택실거래가자료’의 월세 43㎡(국토교
 통부 제시 4인 최소 주거기준)의 월세평가액, 진학자녀 1인 사교육비
 156,000원은 서울시 평균 사교육비의 50%를 적용하고(사교육 항목은
 논란의 소지가 많으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필수 지출로 인정), 영유아자녀 1인 지출금액 98,400원
 은 소득 하위 30%의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을 적용
- $\{(a) + (b) + (c)\} / 365(\text{총 근로시간}) = 6,249\text{원}$

4 2 4 최저생계비 및 실생활 반영 생활임금 산정

- o 기존사례에서 제시되지 않은 산정 방법으로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하고 일부 값은 서울시의 현실을 반영하여 조정
- o 최저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4인가구 기준으로 항목별 기준을
 제시해 주며 2013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49만 5,550원
- o 서울시민복지기준선에 의하면 서울의 물가수준은 전국에 비해 16%가
 높으며, 이를 감안하면 서울의 최저생계비는 173만 4,838원으로 추정
- o 서울시 현황 반영은 ‘가계지출고려 생활임금 산정’ 방법에 나타난 계산
 방법과 동일함
- o 최저생계비를 활용한 생활임금은 6,116원
- ‘최저생계비에 서울시 물가수준 116%를 반영한 결과값에 주거비와 교
 육비를 대체한 금액의 합인 223만 2,580원을 총 근로시간 365로 나누
 면 6,116원

표 3 최저생계비 및 실생활을 반영한 항목별 지출내역

항목	최저생계비(A)	서울 물가수준 반영 A×116%(B)	B의 현실화
식료품비	564,330	654,623	654,623
주거비	236,908	274,813	600,000
광열수도	110,389	128,051	128,051
가구집기	43,392	50,335	50,335
피복신발	61,694	71,565	71,565
보건의료	66,560	77,210	77,210
교육	70,556	81,845	254,400
교양오락	29,020	33,663	33,663
교통통신	152,606	177,023	177,023
기타소비	88,080	102,173	102,173
비소비	72,015	83,537	83,537
합계	1,495,550	1,734,838	2,232,580

4 2 5 **산정방법 종합**

- 적용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액은 최저 5,980원에서 최대 6,448원까지 4가지 방안을 제시
- 통계자료를 조합하여 가급적 복잡한 현실을 반영하고자 했으며 4인 가구를 선정하고 가구구성원(부부, 진학자녀, 영유아자녀)을 고려
- 서울시 생활임금은 다양한 기준과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판단기준 방안을 선택

표 4 생활임금 산정방법 요약

구분	(1) 근로소득기준	(2)가계소득기준	(3) 가계지출 + 실제 지출	(4) 최저생계비 + 실제 지출
자료 원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가계동향조사	가계동향조사 + 기타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 기타
기준	월평균 정액급여	4인가구 전체소득	4인가구 가계지출	최저생계비
근로시간	365시간	365시간	365시간	365시간

표 계속 생활임금 산정방법 요약

구분	(1) 근로소득기준	(2)가계소득기준	(3) 가계지출 + 실제 지출	(4) 최저생계비 + 실제 지출
빈곤기준 적용	근로소득의 평균 50%	가계소득의 중위수 50%	가계지출의 중위수 50%	-
특징	상용·비상용 근로자소득고려	가계 전체의 소득 기준	주거비 및 교육비 현실화	주거비 및 교육비 현실화
생활임금 추정액(원)	5,980	6,448	6,249	6,116
최저임금 대비 비율	약 1.23배	약 1.33배	약 1.29배	약 1.26배
장점	1인 임금근로 적정선 제시에 효과적	가계 전체의 상대적 빈곤기준 파악이 용이	가계의 실제지출 반영	국가의 최저생계기준 충족
적용의 용이성	쉬움	비교적 쉬움	어려움	비교적 어려움

4.3 우선적용대상 검토 및 적용 가능성 검토

4.3.1 우선적용대상 선정

- 우선적용대상 선정 기준은 민간위탁사업 수행에서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생활임금이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공공성이 있는 기관
-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공공부문과 관련있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을 우선적용대상자로 선정

4.3.2 우선적용대상의 생활임금 적용 가능성 검토

- 서울시설관리공단은 2013년 3월 1일 현재 1,853명(정규직 1,521명, 비정규직 332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민간위탁 사업은 총 20개, 소요예산은 1,935억 2,190만 1,000원
- 생활임금 적용 가능성 검토 결과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비정규직 92명¹은 우선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로 분류

- 2012년 12월 서울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만근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공제 이전의 총지급액을 기준으로 한 생활임금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월 8,820원~1,232,918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됨
- 공제금액(4대보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총지급액 기준으로 급여를 파악하였으며 시간외수당, 무급휴일근무수당 등은 총지급액에서 제외

표 5 생활임금 적용 시 서울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한 추가소요금액 추정

(단위 : 원)

구분	(1) 근로소득기준	(2)가계소득기준	(3) 가계지출 + 실제 지출	(4) 최저생계비 + 실제 지출
생활임금 시간급	5,980	6,448	6,249	6,116
생활임금 월급	1,249,820	1,347,632	1,306,041	1,278,244
적용대상인원	1명	19명	16명	15명
월 소요금액 추정	8,820	1,232,918	499,107	61,660

4.4 서울시 생활임금 계산기(Calculator) 설계(안)

4.4.1 개요

- 생활임금 계산기는 다양한 가계형태를 반영하고 복잡한 현실을 고려할 수 있는 생활임금 산정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
- 미국의 생활임금 계산기는 지역 및 가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으나 강제성은 없음
- 2000년 생활임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2004년 첫 번째 버전이 탄생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 생활임금 적정 금액을 제공해주고 있음
- 서울의 가구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서울시 생활임금 계산기 설계 방안을 모색

1 비정규근로자는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월별 인원이 지속적으로 변동됨

4.4.2 생활임금 계산기 구축 과정

- 가구원 수와 가족 구성원을 고려
- 가구원 수에 따라 지출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1인가구부터 N인가구까지 가구원별 생활임금에는 차이가 발생
- 가구원 수가 동일해도 4인가구 기준 총 7개의 가구유형이 존재(편부모, 자녀의 취학 여부 등을 반영)하는 등 다양한 가계 구성 가능
- 지역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나 서울시 구별 데이터 확보가 어려우며, 주거지와 일터가 다를 경우에 생활임금 적용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제외함

4.4.3 생활임금 계산기 결과

- 1인가구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 1인가구의 시간급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생활임금 계산기 구축 시에는 생활임금 산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인가구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 2인가구의 맞벌이는 근로시간이 많아 시간급 생활임금이 낮게 책정되므로 편부모 가계만 대상으로 우선 생활임금 계산기 제공
- 가구원 수에 따라 적절한 데이터로 수정(주거임대료는 400,000원으로 월세 26㎡(최소 주거기준)의 실거래가를 반영)
- 편부모와 부양자녀 1명의 생활임금 가이드라인은 최저 5,194원에서 최대 9,319원
- 3인가구 기준 가계유형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 3인가구 중 편부모 가계는 생활임금 계산기 작성이 가능하지만 맞벌이 부부에 부양자녀가 1명인 가계는 낮은 시급이 산정되기 때문에 보정작업이 필요

- 가구원 수에 따라 적절한 데이터로 수정(주거임대료는 500,000원으로 월세 36㎡(최소 주거기준)의 실거래가를 반영)
- 편부모와 부양자녀 2명의 생활임금 가이드라인은 최저 8,362원에서 최대 13,173원
 - 4인가구 기준 가계유형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
- 4인가구 중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고려
- 부부와 부양자녀 2명의 생활임금 가이드라인은 최저 5,203원에서 최대 15,989원

5 생활임금제 실행을 위한 정책제언

5.1 정책의 기본방향

5.1.1 생활임금은 가족임금

- 생활임금은 가족임금(family wage)의 개념을 관습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서울시의 생활임금은 개인의 임금이 아니라 가족이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필요한 규모로 제시되어야 함

5.1.2 용이한 실행 전제

- 생활임금 산정방법은 정교할수록 복잡해지기 때문에 실제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름
- 생활임금제 도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생활임금 산정방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적용이 용이한 방안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5.1.3 시범사업 적용 후 전면도입 검토

- 국내에는 생활임금 실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실적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도실행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여 전면적인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생활임금제 전면도입에 앞서 일부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수행

5 1 4 **생활임금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생활임금 적용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함
- 임금을 제공하는 사용자, 임금을 받는 근로자, 제도시행 여부의 핵심의 사결정자 중 하나인 시의회 등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
- 생활임금제는 공공부문에서 우선 실행하고 추후 민간부문으로의 확대를 염두에 둬

5 1 5 **제도 유지를 위한 조례제정 추진**

-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근거가 필요하며 조례제정과 같은 장치가 마련되어야 지자체장 또는 시의회 구성원이 교체되더라도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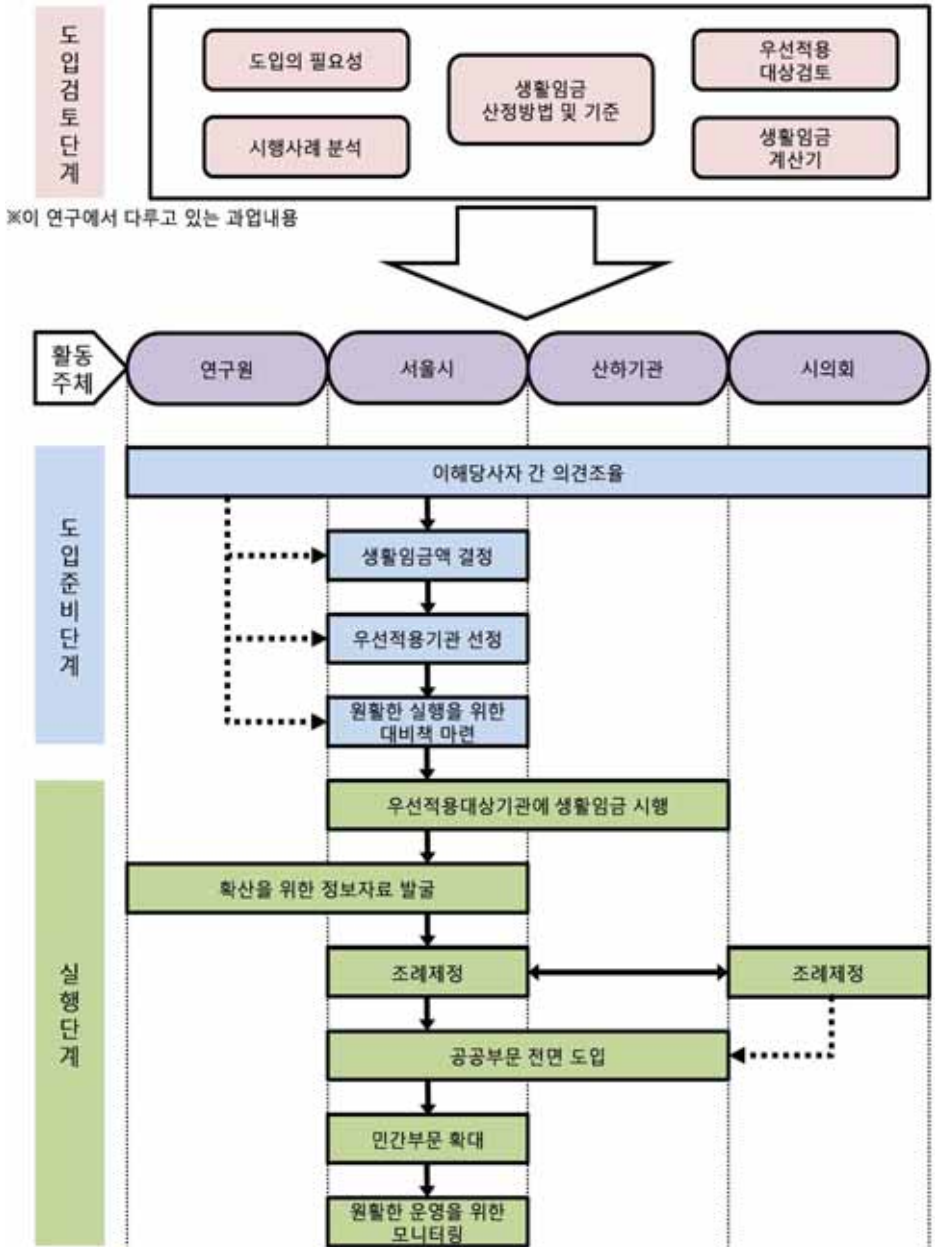


그림 3 생활임금제 실행방안 모식도

521

도입검토단계

- 도입검토단계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사전검토 단계로,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과업내용
- 연구내용은 생활임금제 도입의 필요성, 국내외 시행사례, 생활임금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생활임금 우선적용대상 검토, 생활임금 계산기 설계(안) 제시 등으로 구성

522

도입준비단계

1)

이해당사자 간 의견조율

- 서울시, 시의회, 산하기관 등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의견수렴을 이끌어내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생활임금제 도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 생활임금의 개념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의 노력이 필요함
- 사용자측은 생활임금이 급여 역할을 하므로 임금지급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
 - 생활임금을 시간급으로 제시하게 되면 근로시간과 연동해 급여를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근로자측은 생활임금이 가족임금이므로 노동을 통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급여 수준이라는 방향으로 이해해야 함
 - 생활비는 통상 월단위로 계산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월급여로 산정하기 어려움
-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청취도 진행되어야 함
- 추후 생활임금 조례를 염두에 둔다면 시의회의 설득은 필수적임

2)

생활임금액 결정

- 소득·지출 등을 고려한 4가지 산정방법 가운데 적용이 용이하면서 현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을 선정한 후 산정식 구성요소에 대한 수정사항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 시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해야 함

- 제시한 산정방법에 불확실성을 반영한 일정비율의 금액을 추가하여 생활임금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고려
- 3) **우선적용기관(대상자) 선정**
 - 앞서 정책의 기본방향에서 언급했듯이 서울시는 생활임금제의 전면도입보다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
 -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임금수준과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용대상을 물색
- 4)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비책 마련**
 - 생활임금제의 본격 적용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비책 마련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
 - 문헌자료 및 국내외 우선적용기관의 사례를 통하여 분석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참조

※ 서울시 노원구 사례

- 2013년 생활임금 적용 후 일부 부작용 발생
- 초과근무 거부, 생활임금 미적용 대상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 노원구의 사례는 생활임금제 시행방법이 문제인 것으로 파악됨

- 생활임금제의 원활한 운영, 적용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한 매뉴얼 형식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5.2.3 실행단계

- 1) **우선적용기관을 대상으로 생활임금 실행**
 - 서울시는 생활임금제가 원활하게 실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우선적용 대상기관과 긴밀하게 협력
 - 근로자들의 임금실태를 분석하여 생활임금제 적용 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액을 파악
- 2)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한 정보자료 발굴**
 - 생활임금제 도입에 따른 추가 예산 부담의 과중 여부와 관련된 명확한 정보수집이 필요하며 이를 분석하여 적용기관 확대, 공공부문 전면도입

등 제도의 확산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해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필요
- 3) **조례제정**
- 생활임금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수적
 - 서울시와 시의회는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조례제정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해야 함
- 4) **서울시 산하 공공부문에 전면적으로 도입**
-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고 제도 우선적용기관의 실행 성과가 충분하게 검증되면 서울시 산하 공공부문에 생활임금제 전면도입을 추진
 - 궁극적으로는 생활임금의 공공부문 전면도입을 전제로 하되, 도입 절차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5) **민간부문으로의 확대**
- 생활임금제 도입의 진정한 목표는 이 제도가 민간부문의 동참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민간부문의 생활임금제 도입은 공공부문에 비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확산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기업)들의 자율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
 - 서울시는 생활임금제의 민간부문 확대를 위해 일부 강제성을 띤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고려
- 6) **원활한 시행을 위한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 생활임금제의 원활한 시행, 사용자·근로자측의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한 제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가 필요하며, 생활임금제 본연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어 운영되는지를 모니터링해야 함
 - 생활임금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관(기업)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 방안을 강구
 - 생활임금 산정방법의 수정사항 여부를 파악하여, 필요 시 보완해 최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함

- 7) 생활임금 계산기의 정교화 작업 지속 및 활용
- 생활임금 계산기 설계(안)를 근간으로, 계산기가 더욱 다양한 가족유형, 근로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
 - 생활임금 계산기는 적정임금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므로 이를 근거로 해 노동·복지 등의 정책 수립에 활용